사업장 배부용

11월부터 읍·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야합니다.

"기존 흰색·노란색종량제 봉투 → 업소용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만"



관할 읍·면사무소에서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배부 중입니다.

- 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(1일 5kg 이하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)의 경우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(RFID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업소용 전용수거용기 사용자제)
- 신규 사업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용수거용기 1개 무료로 드립니다.
- 전용수거용기 배부 후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 2회 ~ 3회 수거됩니다.
- 전용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처리수수료는 kg당 51원이 부과되고 월 1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- 수수료 체납 시 수거가 중단됩니다.
- *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(관광숙박업,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, 영업장 면적 330㎡ 이상 음식점)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가 시행('16.11월)중으로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지 않습니다.

문의처: **그ợ과 제주시 생활환경과: 728-3181~3187**

읍·면 생활환경팀(한림읍 728-7652 애월읍 728-8864 구좌읍 728-7742 조천읍 728-7863 한경면 728-7953)

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분리 방법

*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

채소류



- 쪽파, 대파, 미나리 등의 뿌리
- 양파, 배추, 양배추, 무 등 채소류의 겉껍질
- 고추씨, 고추대, 옥수수대

육류



• 소, 돼지, 닭 등의 뼈다귀와 털

어패류



- 조개, 소라, 전복 등의 껍데기
- 게, 가재, 등 갑각류의 껍데기

과일류



- 호두, 밤, 땅콩,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
- 복숭아, 살구, 감, 등 핵과류의 씨
- 과일껍질

기 타



- 계란 등 알 껍데기
- 각종 차류 및 한약재 찌꺼기

채소류의 뿌리와 껍질, 알 껍데기, 한약재 및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 등은 **가연성종량제**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





흰색종량제봉투

배출 시 유의사항

-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이쑤시개, 종이, 호일, 빨대, 일회용스푼, 플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, 뼈조각, 한약찌꺼기 등
-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 시 구입 안내

-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 시 기까운 주방용품점에서 구입을 하여야합니다.
-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오래 쓰기 위해 세척 및 청결상태 유지를 부탁드립니다.
- 장기간 실외배치 및 노후 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플라스틱 특성상 파손될 수 있습니다. ※ 제주시에서 지급한 수거용기의 뚜껑 및 바퀴의 파손은 교체가능(뚜껑, 바퀴만 교체)

문의처: **그ợ과 제주시 생활환경과: 728-3181~3187**

읍·면 생활환경팀(한림읍 728-7652 애월읍 728-8864 구좌읍 728-7742 조천읍 728-7863 한경면 728-7953)